

농림수산부 고시 제87-10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87. 2. 26

농림수산부장관

소수정란수입위생조건

외국으로부터 한국으로 수출되는 소의 수정란(이하 "수정란"이라 한다)의 수입위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수정란 수입위생조건은 수출국내구제역, 우역, 우폐역이 발생한 사실이 없거나 종식이 되어 발생되고 있지 않아야 하며,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조건에 의한다.

2. 수정란의 공정우 및 공란우는 출생 이래 부루세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3. 수정란과 관련한 정액공급소 및 수정란시술소는 정기적으로 수출국 정부 수의 당국의 감시 감독을 받은 곳이어야 한다.

4. 수정란의 공정우 및 공란우는 정액 또는 수정란 채취전 과거 6개월간 부루세라병, 소결핵, 요네병, 렙토스피라라병, 부루팅, 수포성 구내염, 소 바이러스성 설사, 소전염성 비기관염, 전염성 농포성 외음질염, 캄필로 박터피터스 감염증, 트리코모나스피터스 감염증 및 백혈병이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사육된 동물이어야 한다.

5. 수정란과 관련한 공정우는 정액 채취전 6개월 이내에, 공란우는 수정란 채취전 3개월 이내에 수출국 정부 수의관에 의해 별표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6. 수정란의 처리 및 보관에 사용되는 제재료는 해당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이어야 하며 그 처리과정은 해당 정부에서 인정한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7. 수정란은 각개의 주입기에 넣어 수정란 수송을 위한 용기에 밀봉, 선적되어야 하며 주입기에는 공정우와 공란우의 개체를 식별할 수 있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8. 수출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검역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정액채취일

나. 상기 5 항에 의한 공정우와 공란우의 검사일자

다. 수정란의 수정일자 및 동결일자

라. 수정란 개체별 공정우와 공란우의 품종, 나이, 성별과 등록명칭 또는 등록번호

마. 정액 및 수정란 공급소 명칭 및 주소

바. 정액 또는 난자를 채취하기전 6개월 이내에 공정우 또는 공란우에 예방접종을 하였을 경우 예방접종 병명, 예방약 종류 및 접종일자

사. 상기 1, 2, 3, 4, 5, 6항에 명시된 사항

부 칙

이 고시는 1987. 7.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검사질병 및 검사방법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부루세라병	시험관응집반응검사 : 1 : 50에서 음성 또는 50 iu /ml 미만
소 결 핵 요 내 병	튜버큐린 피내반응검사 : 음성 요닌 피내반응검사 또는 보체 결합반응검사 : 음성
렙토스피이라	응집용균반응검사 : 1 : 100에서 50% 미만
캠필로박터피터스 감염증	세균배양검사 : 음성
트리코모나스피터스 감염증	배양검사 및 현미경검사 : 음성
소 백 혈 병	AGID 검사 : 음성
부 루 텅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ELISA

질 병 명	검사방법 및 기준
수포성 구내염	또는 BTID검사 : 음성 또는 과 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증명 보체결합반응검사 또는 혈청중 화시험 : 음성 또는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IBR/IPV, BVD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과 음성
바베시아병 (<i>B. bigemina</i> , <i>bovis</i>)	
타일레리아병 (<i>T. Parra</i> , <i>annu- lata</i>)	수출국 정부에서 실시하는 검 사결과 음성 또는 과거 2년간 수출국내 비발생 증명
아나푸라즈마병 (<i>A. marginale</i>)	
아카바네바이러스 감염증	

